

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4조, 제6조)

－ 「충청북도 정보화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

－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→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－ 범위 내에서 → 범위에서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